어린이집 보육사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육교직원 교육

: 2021.4.01.

* 아래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운영형태 및 규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* 1회 이상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

	교육명	구분	내용
1	보육교직원 안전교육 (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교육 포함)	대상	- 원장, 담임교사(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), 연장보육 전담교사
		근거	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8 - 어린이집평가지표(3-5-2-①)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
		횟수	- 연 1회이상
		기타	- 집합교육(보수교육 연계), 온라인교육, 자체연수 등 -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매년 어린이집당 1인 이상 참여 - 자체교육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,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함.
2	아동학대 예방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
		근거	- 아동복지법 제 26조 - 어린이집평가지표(3-5-2-①)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
		횟수	- 연 1회이상
		기타	-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- 집합교육: 육아종합지원센터 - 온라인교육: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아동권리보장원(www.korea1391.go.kr) - 자체교육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,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함.
3	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
		근거	-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/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
		횟수	- 연 1회 이상 / 1시간 이상
		기타	- 집합교육(보수교육 연계), 온라인교육, 자체연수 등 - 아동권리보장원(www.korea1391.go.kr)자료실에 등재된 신고의무자 교육자로 적극 활용 - 아동권리보장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(또는 교육홍보자료)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등 실시 -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4	어린이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	대상	- 성교육담당자 (원장 및 성교육 담당 보육교직원)
		근거	- 보육사업안내-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 및 대응 매뉴얼
		횟수	- 연 1회
		기타	-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(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) - 교육받은 성교육 담당자가 다른 보육교직원들에게 전달연수 실시
5	성폭력 예방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
		근거	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)
		횟수	- 연 1회이상
		기타	-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(https://shp.mogef.go.kr) 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-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, 자체교육 - 자체교육시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 활용 및 연수보고서 작성 하여 증빙

	교육명	구분	내용
6	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(어린이안전법)	대상	- 보육교직원(영유아를 대면, 보육업무를 보는 보육교직원)
		근거	-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어린이안전법) 제17조 / 보육사업안내(P124)
		횟수	- 매년 1회 / 매년 4시간이상(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)
		기타	- 집합교육(실습교육은 집합교육만 가능), 온라인교육 - 행정안전부>뉴스·소식>새소식>알립니다> '어린이 안전' 검색>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참고 - 어린이안전관리제도 : 행정안전부>업무안내>안전정책실>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참고
7	구조 및 응급처치 (소아심폐소생술 포함) 교육	대상	- 교직원 중 참여직원여부확인
		근거	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-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('20.11.27) - 어린이집평가지표(3-5-2-③) / 응급처치(심폐소생술)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
		횟수	- 연 1회이상(교육과정 내 실습포함)
8	장애인식 개선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 및 사업주
		근거	-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동법 시행령 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
		횟수	- 연 1회이상 / 1시간 이상
		기타	-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- 온라인: 보건복지부 > 정책 > 장애인 > 알림마당 > 교육/홍보자료 - 교육실적제출방법 :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(www.able-edu.or.kr) / 30일이내 결과보고
9	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 및 사업주
		근거	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, 시행령 제5조의2, 법 제86조
		횟수	- 연 1회 이상 / 1시간 이상
		기타	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지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야함 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https://edu.kead.or.kr)
10	개인정보보호 교육	대상	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(원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)
		근거	-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		횟수	- 연 1회(개인정보를 취하는 모든 사업장)
		기타	-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, 자체교육 -단, 자체교육 시 교육계획.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(사진첨부 권장) - 행정자치부 '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'(www.privacy.go.kr)
11	긴급지원신고 의무교육	대상	-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, 직원, 강사 모두 포함
		근거	-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3항
		횟수	-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		기타	- 집학교육 또는 온라인강의 -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(https://edu.kohi.or.kr) - 국가평생학습포털(http://www.lifelongedu.go.kr)
12	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	대상	-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, 직원, 강사 모두 포함
		근거	-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
		횟수	-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		기타	- 온라인 강의 또는 자체교육 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 활용가능(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list.do)

	교육명	구분	내용
13	성희롱 예방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 및 사업주
		근거	-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		횟수	-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		기타	- 온라인 강의 또는 자체교육 - 얘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내 교육자료 활용가능 (https://shp.mogef.go.kr/shp/front/usr/search/selectEduContentsSub.do?menuNo=81063000 - 자체교육시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 활용 및 연수보고서 작성 하여 증빙
14	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	대상	-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(보육교직원)
		근거	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(사용자의 책무)
		횟수	-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		기타	- 온라인 강의 및 서면교육 -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(https://pension.kcomwel.or.kr/)

*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

연번	교육명	구분	내용
1	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	대상	-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
		근거	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/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('20.5.26 개정) -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- 어린이집평가지표(3-4-2-③)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받음
		횟수	-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
		기타	- 도로교통공단 주관교육 이수(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)
2	교통안전교육 (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운전자)	대상	-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
		근거	-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- 어린이집평가지표(3-4-2-③)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받음
		횟수	- 신규 안전교육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- 정기 안전교육: 2년 정기적으로 실시
		기타	- 도로교통공단(www.koroad.or.kr) -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
3	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	대상	-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		근거	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(안전교육), 시행규칙 20조(안전교육)
		횟수	- 신규교육: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,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,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- 보수교육: 2년마다 1회(4시간 이상)
		기타	- 한국생활안전연합(www.safia.org) -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(www.ikap.co.kr) - 대한산업안전협회(www.safety.or.kr) - 한국안전교육협회(www.koreakid.co.kr)

	교육명	구분	내용
4	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	대상	- 모든 어린이집 석면건축물관리자(원장 또는 관리책임자)
		근거	-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		횟수	- 신고 후 3개월 이내 집체교육 8시간 이상 - 교육이수 2년 이내 보수교육(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4시간 이상)
		기타	- 집합교육 : 환경보전협회교육홈페이지(www.kepaedu.or.kr) - 온라인교육 :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(http://ehrd.me.go.kr), 환경보전협회
5	소방 실무 교육	대상	-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(건물 대표자)
		근거	-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
		횟수	- 신규교육: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- 보수교육: 2년마다 1회
		기타	- 한국소방안전원(www.kfsa.or.kr/)
6	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	대상	-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		근거	-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- 연면적 430㎡이상인 모든 어린이집
		횟수	- 신규교육: 1년 이내에 1회 -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		기타	- 환경보전협회교육홈페이지(www.kepaedu.or.kr) - 교육이수 및 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, 개선명령 이행, 관리에 대한 보고·자료제출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→세부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
7	미세먼지 대응교육	대상	- 보육교직원
		근거	-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
		횟수	- 자체교육 : 매년 1회
		기타	- 미세먼지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원장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
8	원장 전문성 향상 교육 (재무회계교육 포함)	대상	- 원장
		근거	- 어린이집평가지표(4-1-1-②) /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
		기타	- 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 이수
9	식품위생교육	대상	- 조리사, 영양사 -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가관장 또는 관리책임자
		근거	- 식품위생법 제56조(교육)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(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)
		횟수	- 연 1회
		방법	-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-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(http://www.kfia21.or.kr)

	교육명	구분	내용
10	조리사위생 교육	대상	- 집단급식소의 조리사(면허소지자)
		근거	- 식품위생법 제56조(교육)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(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)
		횟수	- 2년마다 1회 (정기교육:짝수년도/특별위생교육:홀수년도)
		방법	-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- (사)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(www.ikca.or.kr)
11	영양사 식품위생교육	대상	-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
		근거	- 식품위생법 제56조(교육)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(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)
		횟수	- 2년마다 1회 / 6시간
		방법	- 온라인 교육: KDA온라인위생교육센터 (http://www.kdaedu1.or.kr/)
12	영양사 보수교육	대상	-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, 영양사 관련 업무 종사자
		근거	-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
		횟수	- 2년에 1회 / 6시간
		방법	- 집합교육 3시간 온라인교육 3시간 모두 수강해야함 - 온라인 교육: (사)대한영양사협회 KDA교육센터 (https://www.dietitian.or.kr/)
13	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 교육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
		근거	-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법 제11조 제1항,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
		횟수	- 매년실시
		기타	-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, 자체연수 - 자체연수 자료 : 질병관리본부 결핵 ZERO(http://tbzero.cdc.co.kr)
14	감정노동자 보호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	대상	- 모든 보육교직원(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)
		근거	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- 어린이집 평가지표 4-3-2 /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		횟수	- 연1회 이상
		기타	- 자체교육 : 산업안전보건공단→자료마당→안전보건자료실→업종별자료→서비스업→공통 →책자/교재 "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" - 가이드 : 산업안전보건공단→사업소개→직업건강→근로자건강증진→건강증진자료실 →미디어자료 "직업건강가이드라인-보육교사"